

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선 람	기관의 장



제46호(호외) 2021. 11. 23.(화)

공 고

광양시 공고 제2021-2121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	 1
광양시 공고 제2021-2122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	 10
광양시 공고 제2021-2123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	 15
광양시 공고 제2021-2124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	.. 2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▶ 발행 : 광양시 ▶ 편집 : 홍보소통실 (☎ 797-1944, 행정1945)

자치법규 입법예고

「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11. 23.

광 양 시 장

1. 자치법규명

-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2. 제안이유

-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(1,160명→1,176명, 16명 증)

3. 주요내용

가.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개정
(안 제2조 및 제2조 제1호)

- 정원 총 수 : 현행 1,160명, 개정 1,176명(16명 증원)
- 집행기관 정원 : 현행 1,139명, 개정 1,151명(12명 증원)
- 의회사무기구 정원 : 현행 21명, 개정 25명(4명 증원)

나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(안 별표3)

(단위:명)

구분	계	정무직	일 반 직						별정직	연구직	지도직
			소계	3급	4급	5급	6급 이하	전 문 경력관			
개정안	1,176	1	1,140	1	10	63	1,065	1	1	5	29
현 행	1,160	1	1,124	1	10	63	1,049	1	1	5	29
증감분	16	-	16	-	-	-	16	-	-	-	-

4. 개정 조례안 : 별첨

5. 입법예고 : 2021. 11. 23.(화) ~ 11. 25.(목)

6. 예산상황

- 정원증원 : 16명 증(6급 5, 7급이하 11 증)
- 조례개정 시 소요예산 : 984,375천원(비용추계서 불임)

7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. 11. 25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(참조: 총무과장, 전화 061-797-3220, FAX 061-797-2579, e-mail: kingahooson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 례 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160명”을 “1,176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039명”을 “1,15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21명”을 “25명”으로 한다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(단위 : 명)

기관별 직급별		총 계	본 청	의 회 사무국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·동
총 계		<u>1,176</u>					
정무직 계		1					
	시 장	1	1				
일반직 계		<u>1,140</u>					
	3급	1	1				
	4급	10	4	1	2	3	
	5급	63	27	2	8	14	12
	6급 이하	<u>1,065</u>					
	전문경력관	1					
별정직 계		1					
	6급상당 이하	1					
연구직 계		5					
	연구관	0					
	연구사	5					
지도직 계		29					
	지도관	2			2		
	지도사	27					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1,160명</u>이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139명</u>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21명</u>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1,176명</u> ----- -----. 1. ----- <u>1,151명</u> 2. ----- <u>25명</u>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(단위 : 명)

기관별 직급별		총 계	본 청	의 회 사무국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·동
총 계		1,160 1,176					
정무직 계		1					
	시 장	1	1				
일반직 계		1,124 1,140					
	3급	1	1				
	4급	10	4	1	2	3	
	5급	63	27	2	8	14	12
	6급 이하	1,049 1,065					
	전문경력관	1					
별정직 계		1					
	6급상당 이하	1					
연구직 계		5					
	연구관	0					
	연구사	5					
지도직 계		29					
	지도관	2			2		
	지도사	27					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「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일부개정(정원 증가)에 따른 인건비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일반직 16명 중(6급 5, 7급 이하 11)

나. 추계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(예산과목)	산출근거		
	계 (16명)	6급 (5명)	7급 이하 (11명)
총 계	984,375	366,808	617,567
○ 인 건 비	891,148	335,351	555,797
- 기본급	655,308	249,346	405,962
- 수당	235,839	86,004	149,835
• 정액급식비	26,880	8,400	18,480
• 명절휴가비	65,530	24,934	40,596
• 연가보상비	23,480	8,934	14,546
• 정근수당	54,608	20,778	33,830
• 정근수당가산금	18,360	7,800	10,560
• 시간외수당(정액분)	22,072	7,389	14,683
• 기타수당	24,905	7,767	17,138
○ 물 건 비	39,960	12,900	27,060
- 직급보조비	30,360	9,900	20,460
- 특정업무수행활동비	9,600	3,000	6,600
○ 경상이전	53,267	18,557	34,710
- 성과상여금	53,267	18,557	34,710

3. 작성자

총 무 국 총무과장 정 용 균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 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 입	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4,921,875
자체수입	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4,921,875
세 출	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4,921,875
인건비 등	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4,921,875
재원 조달	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4,921,875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4,921,875
	지방세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4,921,875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광양시 공고 제2021-2122호

자치법규 입법예고

「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11. 23.

광 양 시 장

1. 자치법규명

-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

2. 제안이유

- 소생활권 중심으로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소하는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행정기구 편입

3. 주요내용

- 보건소·보건지소·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 개정
(안 별표1)
 -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(2022. 3월 개소예정)

4. 개정 조례안 : 별첨

5. 입법예고 : 2021. 11. 23.(화) ~ 11. 25.(목)

6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. 11. 25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(참조: 총무과장, 전화 061-797-3220, FAX 061-797-2579, e-mail: kimgahooson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 례 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보건소·보건지소·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
(제6조 제3항 관련)

보건소·보건지소명	위 치	관 할 구 역
광 양 시 보 건 소	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	광 양 시 전 역
광 양 시 도 시 보 건 지 소	광양시 담안2길 16-15(태인동)	동 지 역 일 원 (단, 방문보건사업은 광양시일원)
광 양 시 보 건 소 중 마 통 합 보 건 지 소	광양시 중동로 42(중동)	동 지 역 일 원
골 약 건 강 생 활 지 원 센 터	광양시 성황3길 19	동 지 역 일 원
광 영 건 강 생 활 지 원 센 터	광양시 금영로 127(광영동)	광 영 동 일 원
광 양 시 보 건 소 봉 강 보 건 지 소	광양시 봉강면 비봉길 1	봉 강 면 일 원
광 양 시 보 건 소 옥 룡 보 건 지 소	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615	옥 룡 면 일 원
광 양 시 보 건 소 옥 곡 보 건 지 소	광양시 옥곡면 옥진로 658	옥 곡 면 일 원
광 양 시 보 건 소 진 상 보 건 지 소	광양시 진상면 신시길 232	진 상 면 일 원
광 양 시 보 건 소 진 월 보 건 지 소	광양시 진월면 선소중앙길 32	진 월 면 일 원
광 양 시 보 건 소 다 압 보 건 지 소	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147	다 압 면 일 원

자치법규 입법예고

「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11. 23.

광 양 시 장

1. 자치법규명

-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

2. 제안이유

-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(1,160명→1,176명, 16명 증)
- 「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일부개정(2022. 1. 1. 시행)에 따른 보건·사서·복지·일반행정 분야 등의 신규 행정수요에 정원 배치
- 부서별 팀 신설·분리 등에 따른 6급 이하 정원 조정
- 우리 시 행정여건과 정부 주요 정책사업 등을 반영한 업무 추진을 위해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 등에 두는 직급·직렬별 정원을 조정

3. 주요내용

- 총정원

(단위:명)

현정원 (A)	증 감 (B)						변경정원 (A+B)
	합계	본 청	의 회 사무국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동	
1,160	16	5	4	△10	4	13	1,176

○ 직급별

(단위:명)

구 분	합계	3급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연구사	별정· 정무직	지도직	전문 경력관
조정	1,176	1	10	63	275	292	253	245	5	2	29	1
현행	1,160	1	10	63	270	282	251	246	5	2	29	1
증감	16	-	-	-	5	10	2	△1	-	-	-	-

4. 개정 규칙안 : 별첨

5. 입법예고 : 2021. 11. 23.(화) ~ 11. 25.(목)

6. 예산상황

○ 정원증원 : 16명 중(6급 5, 7급이하 11 중)

○ 규칙개정 시 소요예산 : 984,375천원(비용추계서 붙임)

7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. 11. 25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(참조: 총무과장, 전화 061-797-3220, FAX 061-797-2579, e-mail: kimgahooson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규 칙 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「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일부개정(정원 증가)에 따른 인건비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일반직 16명 중(6급 5, 7급 이하 11)

나. 추계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(예산과목)	산출근거		
	계 (16명)	6급 (5명)	7급 이하 (11명)
총 계	984,375	366,808	617,567
○ 인 건 비	891,148	335,351	555,797
- 기본급	655,308	249,346	405,962
- 수당	235,839	86,004	149,835
• 정액급식비	26,880	8,400	18,480
• 명절휴가비	65,530	24,934	40,596
• 연가보상비	23,480	8,934	14,546
• 정근수당	54,608	20,778	33,830
• 정근수당가산금	18,360	7,800	10,560
• 시간외수당(정액분)	22,072	7,389	14,683
• 기타수당	24,905	7,767	17,138
○ 물 건 비	39,960	12,900	27,060
- 직급보조비	30,360	9,900	20,460
- 특정업무수행활동비	9,600	3,000	6,600
○ 경상이전	53,267	18,557	34,710
- 성과상여금	53,267	18,557	34,710

3. 작성자

총 무 국 총무과장 정 용 균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 : 천 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 입	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4,921,875
자체수입	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4,921,875
세 출	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4,921,875
인건비 등	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4,921,875
재원 조달	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4,921,875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4,921,875
	지방세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984,375	4,921,875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자치법규 입법예고

「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11. 23.

광 양 시 장

1. 자치법규명

-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

2. 제안이유

- 「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(2021. 1. 1. 시행)에 따른 하위 자치법규(규칙) 개정으로 주민 접점 행정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만족도 제고
- 주요 정부 정책 및 우리 市 주요 전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 개정 및 분장사무 조정
 - 과(課) 신설·분리 및 명칭변경, 팀 신설·분리·이관·명칭변경 등에 따른 부서별 업무 재조정 및 국별 부서장 직급 제·개정

3. 주요내용

○ 기구 직급 변경

기구별	명 칭	직 급	
		당 초	변 경
과 (5급)	농업지원과	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	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
	농산물마케팅과	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지방농업연구관	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삭제
	산림소득과	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	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
	기술보급과	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지방농업연구관	삭제 지방농촌지도관 삭제

○ 부서 분장사무 조정(별표 1, 별표 2, 별표 3, 별표4)

부 서 명	주요 분장사무
철 강 항 만 과 (신 설)	수산유통팀 신설
체 육 과 (분 리 / 폐 지)	체육시설운영팀 → 체육시설운영1.2팀 수영장관리팀 폐지
보 건 행 정 과 (신 설)	재택치료관리팀 신설
통 합 보 건 과 (신 설)	골약건강팀 신설
아 동 친 화 도 시 과 (신 설)	아동보호팀 신설
도 서 관 운 영 과 (신 설)	금호도서관팀 신설

4. 개정 규칙안 : 별첨

5. 입법예고 : 2021. 11. 23. ~ 11. 25.(2일간)

6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. 11. 25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(참조: 총무과장, 전화 061-797-3220, FAX 061-797-2579, e-mail: kimgahooson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규 칙 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농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농업사무관·지방농촌지도관으로, 농산물마케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농업사무관·지방농촌지도관으로, 매실원예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농업사무관·지방농촌지도관으로, 산림소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농업사무관·지방녹지사무관·지방농촌지도관으로,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.

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하부조직) ① (생 략) ② 농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· 지방농업사무관으로, 농산물마케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· 지방농업사무관 · 지방농촌지도관 · 지방농업연구관으로, 매실원예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· 지방농업사무관 · 지방농촌지도관으로, 산림소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· 지방농업사무관 · 지방녹지사무관으로,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· 지방농촌지도관 ·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.	제10조(하부조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농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· 지방농업사무관 · 지방농촌지도관으로, 농산물마케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· 지방농업사무관 · 지방농촌지도관으로, 매실원예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· 지방농업사무관 · 지방농촌지도관으로, 산림소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· 지방농업사무관 · 지방녹지사무관 · 지방농촌지도관으로,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.